

도 와 1 동 종 합 감 사 결 과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8. 9. 4 ~ 9. 7(4일)
- 감사범위 : 2015. 9. 1. ~ 2018. 8. 31. 까지 추진한 업무전반
- 감사반원 : 감사팀 3명
- 중점 감사사항
 - 주민센터 운영실태 전반
 - 세출예산 집행실태 및 물품구입 등 적정여부
 - 저소득층 생활보호지원 대책의 효율적 추진실태
 - 각종업무(서무,주민등록,민방위,청소 등) 추진실태

☐ 감사결과 내역

구 분	처분 현황 (건)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	비 고
		계	시정	주의	계	추징· 회수 (세입)	환급· 감액		
계	11	11	6	5	574	574	-	-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불임

인천광역시 남구

주의 요구

제 목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지출 부적정 (1)

기 관 명 도화1동

관 계 분 야 주민자치

-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사용료 등) 제7항에 의하면,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운영경비의 집행) 제1항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경비 사용의 범위로 1. 주민자치센터강사 수당 및 자원봉사자 보상금 2.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등 구입비 3. 주민자치센터 시설 개선 및 장비 등 구입비 4. 주민자치센터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5.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등 관련비용 6.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 7. 그 밖에 위원회 주관으로 하는 공익사업으로 조례 제5조(기능)의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비로 규정되어 있으나,
- 도화1동에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 및 방문 민원인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 및 이미지 조성을 위해 2016.4.19.(화) 17:50 개최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추진한 사항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기능)의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사외벽 청소” 등을 명목으로 계상으로 1,650천원을 부적정하게 지출한 사실이 있다.

[표] 수강료 지출 부적정 내역

구분 연도	지 출 현 황				지원 근거	
	지출일	지출액(원)	채주	세부내역	위원회 의결	연간계획 반영
2016년	합계	1,650,000				
	2016.4.25.	1,650,000	-	청사 외벽 및 유리세척	○	×

조치할 사항 도화1동장은

[주의] 동 주민자치센터 업무관련자는 관련규정 준수하여 회계 집행하도록
업무연찬 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주의 요구

제 목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지출 부적정 (2)

기 관 명 도화1동

관 계 분 야 주민자치

-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사용료 등) 제7항에 의하면,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운영경비의 집행) 제1항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경비 사용의 범위로 1. 주민자치센터강사 수당 및 자원봉사자 보상금 2.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등 구입비 3. 주민자치센터 시설 개선 및 장비 등 구입비 4. 주민자치센터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5.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등 관련비용 6.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 7. 그 밖에 위원회 주관으로 하는 공익사업으로 조례 제5조(기능)의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비로 규정되어 있고,
- 도화1동에서는 [표] 와 같이 지역의 부족한 문화시설을 보완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참여자의 개인 능력 향상을 위한 동기 부여 및 이웃과 함께하는 건전한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소통과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해 매년 수봉공원 인공폭포 야외무대에서 축하공연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 주민노래 자랑, 시상식 등을 행사계획으로 구성하여 약12~14백만원(추정)의 사업비를 마련하여 행사를 진행한 바 있으며, 본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3~4백만원을 행사 운영비로 지원한 사실이 있다.

[표1] 수강료 지출 부적정 내역

구 분	일 시	장 소	주요내용	소요예산	지원액	비고
제4회 수봉폭포 열린 한마당	2015.07.10 (금) 17:00	수봉공원 인공폭포 야외무대	식전행사 축하공연, 주민 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 주민장기자랑, 시상식 등	12백만원 (추정)	3백만원	무대(특효), 음향,조명
제5회 수봉폭포 열린 한마당	2016.09.09 (금) 17:00	수봉공원 인공폭포 야외무대	식전행사 축하공연, 주민 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 주민노래자랑, 시상식 등	14백만원 (추정)	3백만원	무대장치 (조명 및 음향)
제6회 수봉폭포 열린 한마당	2017.09.15 (금) 17:00	수봉공원 인공폭포 야외무대	식전행사 축하공연, 주민 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 주민노래자랑, 시상식 등	13.6백만원 (추정)	4백만원	음향,조명, 핀마이크, 촬영아시바

- 수봉폭포 열린 한마당 전체 행사 계획 중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는 스포츠댄스, 경기민요, 라인댄스, 요가 등의 프로그램이 20~30분 공연으로 행사 전체 규모에 비하여 참여도가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센터 수강료에서의 행사 지원액이 과도하게(전체 행사비의 21.4~28.6%) 지원되고 있고,
- 또한, 행사에 지원되는 주민자치센터 수강료(300~400만원)를 도화1동 수봉폭포 축제 추진위원회 위원장 명의 시중은행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한 후, 행사 종료 후 지원된 주민자치센터 수강료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않고 있어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집행에 있어서 불투명하다.

조치할 사항 도화1동장은

[주의] 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주민자치 행사비 지원 시 회계 집행의 투명성 및 객관성이 확보 되도록 사전심의 및 사후정산에 철저를 기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주의 요구

제 목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도화1동

관 계 분 야 청 소

- 「폐기물관리법」 제68조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8조 규정에 의거 생활쓰레기를 무단투기한 자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 [별표8]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 과태료를 부과 할 때에는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의견 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고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부과 및 징수 절차는 종료된다.
 -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 2. 과태료 부과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 4.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 5. 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 6. 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 7.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도화1동에서는 2015년 9월부터 2018. 8월까지 무단투기 과태료 123건, 6,374천원 중 총99건, 5,412천원을 부과하면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의 통지(결재) 없이 과태료를 감경 부과하였다.

조치할 사항 도화1동장은

[주의] 관련규정 준수하여 절차대로 과태료 업무 처리 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시정 요구

제 목 전기자동차 공영주차장 월정액 지출 부적정

기 관 명 도화1동

관 계 분 야 회 계

-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제1항에서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하며,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친환경적 자동차란 전기자동차(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원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태양광 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연료전지자동차 등으로 되어 있으며,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 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에서 「주차장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 과 같고,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구분	1회 주차권		전일주차권	월정기주차권
	최초부터 30분까지	30분초과후 15분마다		
1급지	1,000원	500원	10,000원	100,000원
2급지	600원	300원	6,000원	60,000원
3급지	400원	200원	4,000원	40,000원
4급지	300원	150원	3,000원	30,000원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급지구분)에서 [별표1]의 급지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급지 : 상업지역 중 교통혼잡지역.
2. 2급지 : 1급지를 제외한 상업지역 및 기타지역 중 상업기능이 활성화된 지역.
3. 3급지 : 1, 2, 4급지를 제외한 전 지역.
4. 4급지 : 주거지전용 주차구역.
5. 구청장은 교통혼잡 및 주차수요 등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
6. 기타 : 제2조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급지 구분시 구청장은 해당지역 주민 (구 의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다.

○ 도화1동에서는 2017.9.1부터 2018.9.30까지 맞춤형복지를 위해 주민센터에 보급된 전기 자동차를 「도화1동 노상주차장(2급지)」에 주차하기 위해 월정액을 지출하면서 전기 자동차 감면(50%)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신청을 하지 않고 주차요금을 지출하였다.

[표] 도화1동 노상주차장 전기차 월정액 지출현황

품의일자	제 목	지출금액 (원)	채주	사용기간	감면 금액(원)
2017.09.21.	전기차 공영주차장 주차비 월정액 지출	240,000	-	2017.09.1~2017.12.31.	120,000
2018.01.23.	상 동	60,000	-	2018.01.01~2018.01.31.	30,000
2018.02.13.	상 동	60,000	-	2018.02.01.~2018.02.28.	30,000
2018.03.12	상 동	240,000	-	2018.03.01.~2018.06.30.	120,000
2018.07.06.	상 동	180,000	-	2018.07.01.~2018.09.30.	90,000
계		780,000			390,000

조치할 사항 도화1동장은

[시정] 관련규정 업무 연찬하여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고, 감면받지 않고 기 집행 된 주차요금 390,000원은 회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시정 요구

제 목 초과근무 수당 지급 부적정

기 관 명 도화1동

관 계 분 야 회 계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방법은 별도의 시간외 근무명령이나 승인 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10시간)으로 지급 하고,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 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나,
- 도화1동에서는 출산휴가,교육 등으로 실근무일수가 15일에 미달하는 직원 2명에 대하여 184,860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초과근무 수당 정액분 지급 부적정 현황

대상자	지급월	정액분 지급시간	지급금액	근무미달일수	초과금액	비 고
				계	184,860원	
○○○	18.03	10시간	114,010원	4일 (근무일수 11일)	30,400원	○ 교육 - 2018.03.19.~18.04.27.
	18.04	10시간	114,010원	14일 (근무일수 1일)	106,400원	
○○○	17.05	10시간	102,990원	7일 (근무일수 8일)	48,060원	○ 출산휴가 - 2018.02.21.~18.05.21.

조치 할 사 항 도화1장은

[시정] 관련규정 준수하여 초과근무수당 집행하시고 부적정하게 집행 된 초과근무수당 184,860원 회수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주의 요구

제 목 신용카드 사용 및 관리소홀

기 관 명 도화1동

관 계 분 야 회계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 IV장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 요령에 따르면 대형할인점, 문구점 등에서 구매금액에 따라 적립해주는 인센티브로 세입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무용품 등의 구매나 불우이웃돕기 등 행정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사용 후 매출전표 서명란에는 사용자의 소속,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카드사용 내역을 검색하여 분임재무관(실·과장)까지 보고(결재)하고 분임재무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신용카드 발급절차의 관리방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발급 시에는 신용카드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계좌는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의 책임하에 기관명의로 개설한다. 또한 신용카드를 신청할 때에는 신용카드별로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담당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신용카드 보관·관리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직제의 개폐 시 전·후임 공무원은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매출 전표를 상호 확인한 후 이를 수수(收受)하고 그 뜻을 기재한 서면에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 그러나, 도화1동에서는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감사기간 중 매출전표 서명란에 사용자의 소속, 직급, 성명을 대부분 기재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왔으며, 담당공무원이 변경 되었음에도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 발급대장을 관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도화1동장은

[주의] 신용카드 사용 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 요령 준수하여 세출예산 집행하도록 관련자 업무연찬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시정 요구

제 목 청소년증 발급업무 처리 부적정

기 관 명 도화1동

관 계 분 야 사회복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청소년증) 제1항에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 동법 시행규칙 제2조(청소년증의 발급신청) 제1항에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증 발급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주소지와 관계없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이 청소년증 발급 전에 임시증명서로 활용하기 위하여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진 1장을 추가로 제출받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4조에 따른 청소년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은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대리할 수 있다.

○ 동법 시행규칙 제5조(청소년증의 파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청소년증(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훼손된 청소년증)을 파기하여야 한다. 1. 훼손으로 다시 청소년증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2. 분실 등의 사유로 보관하고 있거나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발급된 청소년증에 대하여 수령안내를 통지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

- 또한, 「청소년 사업 안내지침」에 따르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청소년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아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서식 뒷면에는 청소년증에 관한 업무처리와 관련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내역(수집목적,이용기간,제공기간)을 안내하고 신청자(본인)의 자필 서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청소년 사진 1매, 발급신청서, 대리인신분증, 대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이 때 청소년증 발급 신청을 받은 공무원은 신청인(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본인여부를 확인 후 청소년증 발급대장에 해당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청소년증은 공적 신분증으로 본인임을 명확하게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하며 본인 확인 없이는 발급하여서는 아니됨을 명시하면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이 신분증 등 대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분증, 재직증명서)를 확인 후, 대리인 신분 및 해당 청소년의 관계가 확인되면 대리인이 제출한 발급신청서와 행복e음 시스템으로 조회된 내용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되,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상의 다른 세대원 이름 또는 생년월일을 확인하는 등 추가적인 확인도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 그러나, 도화1동에서는 청소년증 발급 및 교부업무를 추진하면서 [표1] 과 같이 청소년 본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인의 학생증 사본, 체크카드 사본 등을 징구·보관하고 있으며,

[표1] 청소년증 본인 발급 신청서 접수 시 부적정 현황

연번	신청인	민원명	신청일자	적 요	비고
1	김**	청소년증 발급 신청	2016.08.24.	신청인 학생증사본 징구·보관	
2	정**	상동	2016.09.29.	상동	
3	김**	상동	2016.10.17.	신청인 체크카드 사본 징구·보관	
4	박**	상동	2017.04.17.	주민등록등본 사본 징구·보관	
5	조**	상동	2017.06.20.	신청인 학생증사본 징구·보관, 신분증 사본 징구	
6	전**	상동	2017.06.23.	재학증명서 사본 징구	
7	이**	상동	2017.06.23.	신분증 사본 징구	
8	장**	상동	2017.08.07	학생증 사본 징구	
9	권**	상동	2018.02.22.	가족관계증명서 징구	

○ 또한, 신청인의 부모 등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 신분증 등으로 대리인의 관계 및 적정 자격여부를 확인 후 접수가 가능함에도 [표2] 와 같이 불필요하게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등을 징구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다.

[표2] 청소년증 대리신청 시 불필요 서류 징구·보관 현황

연번	신청인	민원명	신청일자	적 요	비고
1	김**	청소년증 발급 신청	2015.11.05.	대리인 주민등록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2	이**	상 동	2016.03.17	가족관계증명서	
3	유**	상 동	2016.05.10	상동	
4	김**	상 동	2016.08.08.	대리인 운전면허증 사본	
5	노**	상 동	2017.01.05	대리신청인란 미기재, 대리인 주민등록증 사본	
6	최**	상 동	2017.01.31.	대리인 운전면허증 사본	
7	최**	상 동	2017.01.31.	대리인 운전면허증 사본	
8	박**	상 동	2017.03.08.	대리인 운전면허증 사본	
9	김**	상 동	2017.03.08.	대리인 운전면허증 사본	
10	배**	상 동	2017.05.19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주민등록증사본	
11	김**	상 동	2017.08.22.	대리인주민등록증사본	

○ 또한, 청소년증을 구청에서 이송받는 대로 즉시 교부하여야 함에도 총 1건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청소년증이 대상자들에게 교부되지 않고 있는 바, 이러한 미수령 청소년증의 경우 관련법과 해당지침에 “수령안내 등을 통지 후 1년이 지난 경우 폐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표3] 과 같이 수령안내 통지 등 관련 절차 이행없이 청소년증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등 청소년증 신청서 접수·교부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3] 청소년증 미교부 관련 처리 부적정 현황

연번	접수일자	신청인	유효기간	교부현황	적요
1	2017.06.23.	전**	2019.06.22.	미교부	대상자 수령안내 미통지 등 적정 조치 미실시

조치할 사항 도화1동장은

[시정] 청소년증이 신분증 용도로 사용됨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시고, 관련 업무 지침 등을 숙지하시어 신청접수부터 교부 및 파기까지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미교부 된 청소년증은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시정 요구

제 목 장애인자동차 표지관리 미흡

기 관 명 도화1동

관 계 분 야 사회복지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대상), 제27조(장애인사용 자동차 표지의 발급 등) 및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지침에 의하면,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으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을 원칙으로 한다.
- 위와 같이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 및 발급된 자동차 표지는 신청 및 발급사항을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동장은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권의 변동, 말소, 차량번호의 변경 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파악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 명의의 차량일 경우는 차량소유자의 보호자의 주민등록 변동사항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 회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또한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 운전자가 주민등록을 변경한 경우 등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차량을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차량을 장애인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 표지를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함에도
- 도화1동에서는 [표] 와 같이 최○○ 등 4명은 보호자 명의의 차량으로 감사일 현재 대상자와 보호자가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되어 장애인자동차표지 관리 등의 업무에 미흡한 사실이 있다.

[표]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미흡 현황

연 번	대 상 자			차량번호	소유자 성명	운전자 성명	표지 유형	발급일자	미흡현황
	성명	생년 월일	장애 유형						
1	최**	-	-	-	박**	박**	보호자 주차가능	2017.08.29	2015.10.26. 세대분리
2	임**	-	-	-	용**	용**	보호자 주차가능	2017.07.11	2017.9.5. 세대분리
3	김**	-	-	-	김**	김**	보호자 주차가능	2017.05.29	2017.5.29. 세대분리
4	최**	-	-	-	김**	김**	보호자 주차가능	2017.02.09	2017.12.12. 세대분리

조치할 사항 도화1동장은

[시정]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어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미회수된 표지는 회수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시정 요구

제 목 말소된 장애인 복지카드 미 회수(미 폐기)

기 관 명 도화1동

관 계 분 야 사회복지

- 장애인등록법 제 32조 제2항에 따르면 장애인이 사망하면 같은 법 제 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그 등록증을 반환하여야 함. 또한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 지침에 따르면 장애인이 사망, 해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거주불명자 제외),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 장애등급이 변경되어 장애인복지카드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의 장애인 복지카드를 회수 및 폐기해야하며, 장애등록 취소 또는 같은 법 제 32조 제3항에 따라 장애등급 변경 등 유효하지 않은 복지카드 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장애인 등록증 반환통보서(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 8호서식)을 장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그러나, 도화1동에서는 장애인등록카드가 말소된 김○○에 대하여 사유 발생일 이후부터 감사실 현재까지 기존의 장애인복지카드를 회수 및 폐기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말소된 장애인복지카드 미회수(미폐기) 현황

연번	성명	생년월일	말소/정지일자	말소/정지 사유	비고
1	김○○	-	2018.8.13.	사망말소	

조치할 사항 도화1동장은

[시정]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어 장애인복지카드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미회수 장애인복지카드는 회수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시정 요구

제 목 주민등록 번호부여대장 등재 누락

기 관 명 도화1동

관 계 분 야 주민등록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의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주민등록 번호부여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하고, 주민등록 번호부여는 “주민등록번호조립부”에서 각 개인의 해당번호를 찾아서 그 번호의 숫자에 연필로 “○” 표시를 하고 담당·주무가 직접 “번호부여대장”의 확인란에 날인하고 “번호조립부”의 실제 사용한 번호 우측상단에 소인하여야 한다.
- “번호부여대장”은 반드시 생년월일, 성별로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번호대장에 등재하여 등재 누락으로 인한 중복 부여하는 일이 없도록 주민등록번호 부여·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도화1동에서는 [표]와 같이 출생자에 대한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하고 “주민등록 번호부여대장” 등재 사항 기록을 누락하였다.

[표]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등재 누락 현황

연도	성명	부여번호	번호부여일	부여사유	비고
2016	우**	-	2016.12.05	출생	등재누락
2016	김**	-	2016.10.11.	출생	등재누락
2017	서**	-	2017.09.20.	출생	착오기재
2017	김**	-	2017.12.06	출생	등재누락
2018	김**	-	2018.03.13.	출생	등재누락
2018	김**	-	2018.08.27.	출생	등재누락
2018	김**	-	2018.08.13.	출생	등재누락
2018	박**	-	2018.08.31.	출생	등재누락

조치할 사항 도화1동장은

[시정] 기재 누락된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 정리하시고 주민등록번호부여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주의 요구

제 목 인증기 사용 현금 및 신용카드 수수료 처리 부적정

기 관 명 도화1동

신분상 조치 기관경고

관 계 분 야 주민등록

- 「인천광역시남구 수입증지 조례 제7조(수입금의 납입)에 의하면 같은 조례 제3조(적용범위)제2항에 따라 납부한 현금과 제5조(계기의 사용), 제6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에 따라 판매한 증지수입의 납입은 그 다음날 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징수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 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 도화1동 주민센터에서는 인증기 현금 수수료에 대하여 2015. 11.09.부터 2018.09.04.까지 금고에 1일에서 최대 19일까지 497건 72,092,600원을 지연 납입 한 사실이 있다. 또한, 인증기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하여 2016.01.04.부터 2018.08.28.까지 금고에 1일에서 최대 13일까지 432건 9,414,700원을 지연 납입한 사실이 있다.

[표] 인증기 수수료 지연 납입 현황

구분	기간	건수	지연금액	지연기간	비고
인증기 현금 수수료	2015.11.09. ~ 2018.09.04.	497건	72,092,600원	1일 ~ 19일	
인증기 신용카드 수수료	2016.01.04. ~ 2018.08.28.	432건	9,414,700원	1일 ~ 13일	

조치할 사항 도화1동장은

[주의] 관련규정 준수하여 세외수입이 기한 내 납부조치 되도록 관련자 업무연찬 하시고 업무관련자 엄중 주의 촉구 하시기 바랍니다.